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방안

정 성 훈*

Abstract

Daily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rarely receive the benefit of systematic safety and health training as they are required to move from one construction site to another in response to the start, completion, and repetition of construction works. Also, small- to medium-sized construction sites often lack the capacity to train their workers.

Therefore, as in the advanced countries, basic safety training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should be conducted in the industrial-level, rather than in individual workplace-level, to make the training more effective. By doing so, only workers with the basic safety training will be able to engage in construction works. Consequentl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ill decrease, as workers themselves who are at the forefront of the construction worksites are empowered to play the central role in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1. 서 론

‘07년 건설업 산업재해의 89.5%(‘07년 건설업 산업재해 19,050명 중 17,054명이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사 6월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어 신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채용시 교육을 통한 신속한 현장 적응이 필수적이나, 건설근로자 교육 이수율은 46.4%(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04.1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중 건설근로자는 767천명으로 건설업 전체 근로자(1,406천명)의 54.6%를 차지(경활 부가조사, ‘08.8월)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일반적인 취업경로는 인맥을 통하거나 직업소개소・새벽 인력시장을 통하여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생성·소멸 반복으로 근로자 들은 수시로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와 같은 이유로 건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 현장단위의 안전보건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으나 대부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개별현장 단위가 아닌 건설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1>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8](개정 2009.8.7)

2. 국내 근로자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2.1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규정

현행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설공사 중 또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을 인지하여 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근로 시 실시하는 매월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교육유형과 업종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유형은 <표 1>과 같으며, 정기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동법 제31조제1항).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동법 제31조제2항). 특별교육이란 법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당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동법 제31조제3항)을 말한다.

2.2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다발 및 안전보건교육 미흡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접근 방식으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개별 현장단위로 모든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 현장에서도 개별 현장마다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규모 이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산업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표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건설업 전체 재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제반 여건 등으로 단기간만 일하고 옮기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한편,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자 역시 안전교육의 다양성 부족 및 유사내용의 반복교육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즉, 전문적인 강사의 능력이 모두 갖추어 있지 않아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어려움 있고,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채용 시 교육을 반복하여야 하고, 교육준비 등으로 실질적인 산업안전 활동 시간에 투입할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표 2>는 건설업의 규모별 재해현황 등을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건설현장 규모별로 재해자 분포 및 재해율을 살펴보면 3억원미만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재해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재해율도 높게 나타난다. 3억원미만 소규모건설현장의 경우 재해율은 1.86%로 건설업 전체 재해율 0.65%보다 286% 높게 나타나 건설업 재해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20억원미만 중소규모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수 누적구성비는 46.8%인데 비해 재해자수 누적구성비는 89.0%이다. 즉, 중소규모건설현장에

서 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이들 현장의 재해를 줄이지 못할 경우 건설업종의 재해율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규모별로 건설현장 당 재해자수를 살펴보면 소규모건설현장 일수록 적다.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 당 재해자수는 0.26명인데 비해 3억원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 당 재해자수는 0.05명이다. 즉, 사업장 당 재해자를 비교 할 때는 120억원이상 대규모건설현장 위주의 재해예방 사업을 전개 할 경우 재해자수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고,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투입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재해율 및 재해자 점유율이 높아 중소규모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규모별 재해율 비교 및 재해자 분포

(단위 : 개소, 인, %)

구분	총계	3억원 미만	3억~20억원미만	20억~120억원 미만	120억~1,000억원미만	1,000억원 이상
사업장수(A)	236,747	178,854	36,813	14,045	5,964	1,071
근로자수(B)	3,206,526	486,462	500,872	513,980	970,673	734,539
구성비(%)	100.0	15.2	15.6	16.0	30.3	22.9
누적구성비(%)	100.0	15.2	30.8	46.8	77.1	100
재해자수(C)	20,998	9,052	6,028	3,603	1,761	554
구성비(%)	100.0	43.1	28.7	17.2	8.4	2.6
누적구성비(%)	100.0	43.1	71.8	89.0	97.4	100
재해율(%)(C/B)	0.65	1.86	1.2	0.7	0.18	0.08
사업장 당 재해자(명) (C/A)	0.09	0.05	0.16	0.26	0.29	0.52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재해현황분석2009

<그림 1>은 건설현장의 규모별(공사금액별)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30억원미만 중소규모건설현장의 안전능력 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산업안전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 ‘받아 본 적 없다’고 응답한 건설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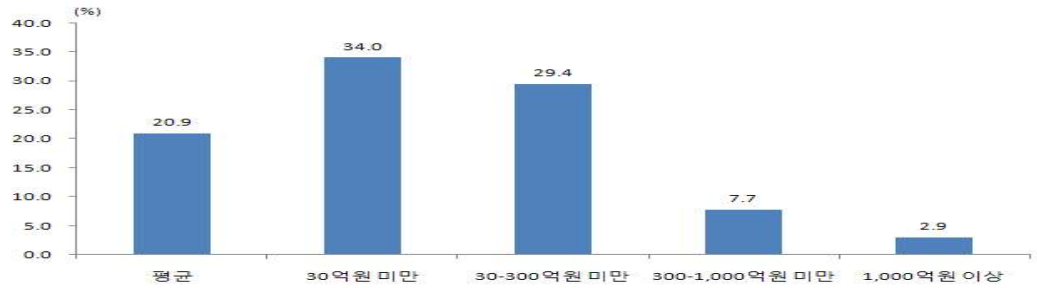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07.5)

2.3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공사금액별로 건설현장의 재해율과 재해자수 그리고 사업장 당 재해자수를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많으나 현장별 재해자는 적으므로 개별 현장을 통해 접근하는 사업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업종의 재해감소를 위한 정책적인 추진방향은 법적사업이면서 고위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지속 운영 및 정부나 기타 안전관련 기관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개별 현장 차원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기존의 사업장 방문 점검·지원이외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으로 건설재해예방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즉, 건설산업의 기초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후 이수증을 보유한 건설근로자만이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이동이 더욱 잦고 산업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 차원의 안전보건교육 측면에서 선진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도입 추진과정 및 시범사업 추진

3.1 기초안전교육 도입의 추진과정

건설산업 차원의 안전보건교육 측면에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12월 『고용노동부 제2차(2009~201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으로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Green Card)』가 채택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준비를 착수하여 2009년 1월부터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학계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T/F를 구성·운영하여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였다. 2009년 3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 사업』으로 확정, 2009년 5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2009년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16개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0년도는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 주도의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대 주요 건설업체 중심으로 전년도 교육을 수행한 16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를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7.15~8.4)가 완료되어 개정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인 근거를 갖

고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 도입 추진과정

3.2 기초안전교육 시범 추진결과

기존의 현장단위별 실시하는 채용시 교육을 선(先) 안전보건교육 후(後) 건설작업에 투입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건설산업 차원의 개인별 교육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단위의 개인별 이력관리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허브기관으로 한 건설산업 차원의 개인별 교육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마지막으로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2009년 6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안전보건공단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16개 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선정된 우수한 16개 교육기관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안전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카드 등을 발급하여 주고, 교육이수자가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교육이수 카드 등을 제시하면 건설업체는 취업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림 2>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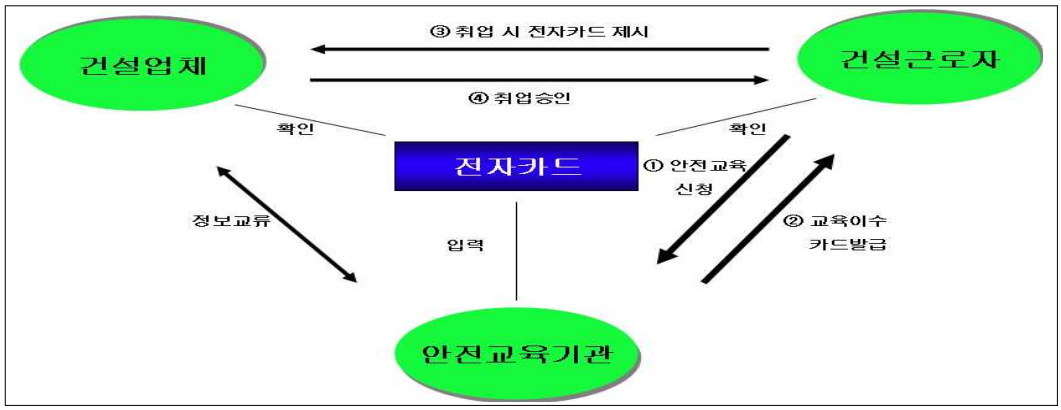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도 시범적으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기초안전교육 이수제(Green Card)」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였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2009년 6월부터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12월까지 101,145명을 실시하여 101%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초안전교육은 4시간을 기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영상,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표 4>에서 교육이수자의 희망직종을 살펴보면 철근목공(21.9%), 전기설비통신공(18.7%), 보통인부(17.9%) 순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4> 교육이수자 희망직종

(단위 : 명)

계	철근 목공	전기설 비통신 공	보통 인부	비계 공	토공	용접 공	석공	미장 공	조적 공	기타
101,145 (100%)	22,142 (21.9%)	18,962 (18.7%)	18,113 (17.9%)	1,807 (1.8%)	2,317 (2.3%)	2,311 (2.3%)	1,617 (1.6%)	2,702 (2.7%)	1,582 (1.6%)	29,592 (29.2%)

3.3 기초안전교육 시범 추진 성과

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에 따른 재해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별 이수일자를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교육이수자의 이수 시점을 전후한 재해율을 비교 하였다.<표 5>. 즉, 비교 대상은 각 교육이수자별 이수완료일을 전후로 한 2008년과 2009년의 동일한 시기의 교육이수자이다. 예컨대, A이수자의 이수완료일이 2009년 7월 15일이라면 2008년 7월 15일 이후 기간과 2009년 7월 15일 이후 기간의 재해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교육이수자 중 2009년 재해자수(7.1~12.31)는 246명으로 재

해율이 0.11%이고, 교육이수자 중 2008년 동일한 시기의 재해자수(7.1~12.31)는 246명으로 재해율이 0.24%이다. 즉, 2008년 동기 재해율을 100%로 할 때 2009년의 재해율은 45.8%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 재해감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이 지속된 후에는 재해는 지속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초안전교육 이수 후 일정기간 후에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5> 교육이수자의 교육 전후 재해율 비교①

구분	'08년(7.1~12.31)	'09년(7.1~12.31)	교육이수자수
재해자수②(명)	246(228)	109(102)	101,145명
재해율(%)	0.24(0.23)	0.11(0.10)	
전년 동기 대비	100%	45.8%(43.5%) 수준	

주 : ① 비교 기간은 각 교육이수자별 이수완료일을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의 동기 비교
- 예를 들어, A이수자의 이수완료일이 2009년 7월 15일이라면 208년 7월 15일 이후 기간과 2009년 7월 15일 이후 기간의 재해 여부를 분석

② 괄호는 업무상사고 재해자이며, 근로자 수는 교육이수자 101,145명을 기준으로 함

또한, 교육이수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육이수자(800명) 및 건설업체 관계자(100명)의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결과 88.26%의 높은 교육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이수자의 만족도 평가 결과 91.7%의 만족도가 나타났고, 건설업체의 만족도는 84.3%의 만족도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1]되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교육이수자 585명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안전교육의 만족도가 92.1%로 양호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안전교육의 양호한 성과는 향후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도입 필요성의 당위성을 입증한 셈이다.

4. 외국의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2001년도 호주 NSW(New South Wales)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기초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한 후 교육이수카드(Green Card)를 발급받아 건설현장에 취업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교육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초안전교육이 개인(강사) 및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문제가 지속 발생되자 교육기관으로 일원화 하였고, 개인(강사)의 직접 수행에 따른 교육이수카드의 재발급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WorkCover(호주의 산업안전청)에서

1)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09.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을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교육이수 카드(White Card)가 발급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교육실시 후 그룹토의・질문・시험 등 절차를 통해 교육이수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싱가폴은 2007년도 유경험 근로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 갱신하는 근로자에게 유연성 부여, 증가하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자국 내 건설현장에 대한 미숙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도입하여 호주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건설현장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교육실시 후 시험에 합격자(70점 이상)에 한하여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호주와 달리 교육이수 후 2년 또는 4년마다 교육을 재 이수해야하도록 기초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속 유입에 따라 외국인이 자국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방법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6> 선진 외국의 기초안전교육 제도

구분	호주	싱가폴
교육대상	전 건설근로자 (내·외국인근로자)	건설근로자 (특히 외국인근로자)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교육기관	직업훈련원에 등록된 인증교육기관(RTO)	노동부에 등록된 인증교육기관(ATP)
교육방법	현장 출입전 교육 (교육기관 교육장 교육)	현장 출입전 교육 (교육기관 교육장 교육)
교육비 부담	교육이수자(근로자)	사업주(협력업체)
강사자격	- 일정 건설현장경험과 직업건강안전 교육과정 수료 - 자격증(Certificate Ⅳ)소유	- 안전보건자격증 - 교육 및 평가 자격증 - 안전담당자 등 실무경력5년이상
교육 후 확인	그룹토의, 개인질문, 시험병행	필기시험
교육확인증	화이트 카드 발급	교육기관별 확인증 발급
갱신여부	갱신 없음	2년 또는 4년마다 갱신
교육기관 수준관리	- 사고 또는 민원 발생시 근로자 화이트카드 지참여부 확인 - WorkCover에 의한 정기감사 실시 - 인증교육기관(RTO)는 교육실시전 WorkCover에 통보	- 건설근로자 교육이수여부 주기적 점검 - 시험문제 개발 및 보급 - 인증교육기관(ATP) 정기적 감사실시
교육언어	영어 외에 타국어교육도 인정함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등 외에도 미얀마어 등 타언어 교육도 요구
법제화 여부	법제화	법제화

5.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향후 방향 및 기대효과

건설산업 차원의 안전보건교육 측면에서 2009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은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하였으나 2010년도는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10대 건설업체 중심으로 5만명을 목표로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를 반영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2011년도부터는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초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의무화되는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제가 법제화 된다면 건설산업 전체로서는 획기적인 전화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2] 첫째, 건설근로자가 현장 진입 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 행정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동이 잦은 근로자 역시 건설현장 진입 이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공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율 감소를 통해 건설업종 전체의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넷째,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의 물적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의 성과가 지속된다면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전 산업의 재해감소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내 산업재해 수준을 OECD 국가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 갈 것으로 기대된다.

6. 결 론

모든 건설재해예방 노력은 최종적으로 건설근로자를 향한다. 아무리 잘 마련된 안전보건체계라 하여도 최 일선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제는 근로자들도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예방 노력의 중심에 서야하다. 근로자가 재해예방 노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제고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는 안전보건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안전의식 제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시스템인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의 조속한 법제화를 시행하여 근로자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재해예방의 중심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젊고 유능한 근로자가 스스로 건설현장에 유입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도 근로자가 재해예방 노력에 중심에 설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유도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인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도」를 2011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러한 제도

2)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09.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 우리 건설현장에 뿌리내릴 때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선진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7. 참 고 문 헌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4)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09)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사업의 실효성 연구 및 수탁교육기관 평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2009)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7) “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5] 삼성지구환경연구소(2010) “그린삼성(가을호)”